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4. 19.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 우선지원
 -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 간 지원
 - (산출기초)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기준보수(월)	평균임금(일)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 부담	지원결정액 (90%)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0.019%	27,620	13,810	12,420
↳ 음식배달 배달노동자 포함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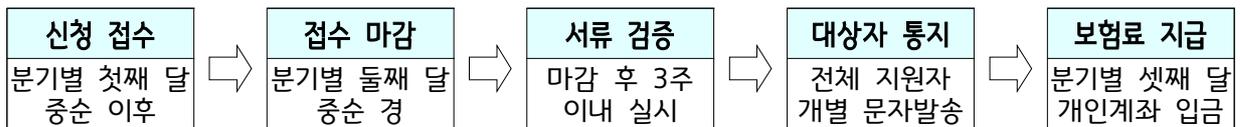
▶ 지원범위 예시

구 분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월별 지원금액 (원)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모집차수				1차			2차				3차				2022년 1차모집 예정
신청시기				A			B				C				
지원범위*	← A →			← B →				← C →					← 2022년 지원 예정 →		

* A, B 시기에 신청한 지원자도 이후 산재보험 납부내역 지속 확인 시 C와 동일하게 지급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교차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셋째 달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체계)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가 충족될 경우 조기 마감

- (1차)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 29일 간
- (2차)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 29일 간
- (3차)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 29일 간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가능
 -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마이데이터 활용 시 제출 불필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발급 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②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개인-‘특수형태근로자’ 유형 선택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인쇄하기 → PDF 저장

※ 보험료 조회기간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조회내역 발급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진행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사업주 경우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발급 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②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관리번호 등록 → 부과년도 및 부과월 선택(보험료 지급신청 해당 기간) → 페이지 하단 사업장 산정내역 내 당월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 인쇄하기 → PDF 저장

- ④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고객용 징수금카드 조회 → 관리번호 등록 → 산재 유형 클릭 → 보험년월일 선택(보험료 지급신청 해당 기간) → 인쇄하기 → PDF 저장

※ 조회내역 발급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진행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된 시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공고일 기준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없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접수 가능하며, 추후 보험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보험료 일괄 지급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031-270-9791/9854/9728/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